



**UA** architects &  
planners Co.,Ltd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203 (4동)  
TEL / (053) 761 - 4164  
FAX / (053) 761 - 4120  
E-mail / theua@naver.com

PROJECT NO.

PROJECT TITLE

NOTE



#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1/2

A1=SCALE : 1/NONE  
A3=SCALE : 1/NONE

## 제1장: 일반사항

### 1-1: 목 적

본 시방서는 어울아트센터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재민 사항으로서 시공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나) 내선 규정	다) 전기 사업법	라) 전기 공사업법
미) 한국 공업 규격	비) 공업 표준화법	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이) 건축법
자) 환경 보전법	처) 기타 관계법령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 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종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다.

### 1-3: 공사 현장의 현황 상況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을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김득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입구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로 한 제반 시설에 정통하여 충분한 경력과 해당 기사 면허 소지자로 김득원이 인정한자로 정한다.

### 1-4: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해당 공사 계획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김득원의 승인을 득하고 매일 공사내용, 예정 공정, 출勤 인원등을 보고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설계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원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공한다.

3) 도급자는 시공에 저하의 각종 시설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자리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면적 필요로 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은 김득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5) 도급자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명기 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는 김득원의 해석에 따른다.

6) 공사 중 김득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김득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7) 세척 또는 시공상 필요로 한 도면은 사전에 제작하도록 작성하여 김득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8) 특기하거나 김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배출되거나 묻어되어 김득사가 고관한 부문은 즉시 김득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김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칼리로 사전 활용(SIZE:12cmx9cm)을 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모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는 사전에 김득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로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의를 표현한 것으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전기 설비들이 터 시설물에 대한 간접을 최소화 풀어서 그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각종 공사에 대한 해당법에 의한 정식의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를 특별한 경우에 제외하여 행하여야 한다.(소방설비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통제업체, 전기 또는 통신설비는 전기통신공사업체, 전기설비는 전기공사업체에 의한 전기공사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12) 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을 지고 그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행하여 수행해야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을 지고 그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행해야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나) 시장자체 및 설비의 경기와 관리

다) 현장 내부의 청소 및 주변환경의 정비

라) 김득원의 지시사항

13)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시무실 및 청고동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 사항은 김득원의 지시에 따르며 회기를 사용하는 장소나 인력상 저정소들은 가능한 한 본 관계법규에 따라 별도로 민족을 사용하고 그 소화기를 비치한다.

### 1-5: 설계변경

아래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타 김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그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될 때

2) 건축, 로목 구축물, 기계설비, 기타 관계 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때

3) 관리 관공서, 전력 회사등의 계획 변경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4) 공통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하며 안전 및 제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6: 안전관리 및 제해 방지

1) 적공전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제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제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1-7: 시설물의 훼손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에는 즉시 김득원의 요구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원 시설들은 김득원의 요구에 따라 본 시방서에 의한 시험을 밟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8: 관공서 수속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공사 착공시 또는 시공시 필요한 관공서, 기타 관계기관의 허가증과 검사는 도급자가 별주처를 대행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한전빌입금, 사용전공사비 제외)

### 1-9: 시공입회 및 검사

- 1) 시공후 침침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는 김득원 입회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2) 공사별로 공정에 따라 김득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김득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 3) 검사는 김득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일부분만 시행할 수 있다.

### 1-10: 기성 부문의 보호

기성 부문 및 기자재는 손상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1-11: 사용자자 및 기기

-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김득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을 및 그 이상인 제품은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품이 없을때는 K.S 규격에 준한 시장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건본물을 제출하여 김득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본품은 공사원료시까지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김득원이 건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CATALOGUE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볼 수 있다.
- 3) 상기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철거로 반출하여야 하며 일단 합격된 자재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허자가 있는 물품등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4) 시방서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조심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시는 현장 김득원은 그 기자재의 시험을 명시할 수 없으며 그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1-12: 검사 및 시방

- 1) 사용 기자재는 K.S 표시품 및 공인기관 시험필한 품목은 현장 반입후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작회사 자체 시험 품목은 반입 후 김득원이 임의로 체취하여 별표 1-1과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영할 수 있다.
- 2) 단, 그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2) 시공 사고 시험은 별표 1-2의 항목에 대하여 그 우측면에 기재한 내용으로 시행하며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3) 도급자는 시험 품목에 대한 그 기구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 \* 전기자재 출정기
- \* 절연저항 측정기(500V급, 1000V급)
- \* 촉크메타
- \* 점검기
- \* 면봉 테스터
- \* 카베라

- 4)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고 인정될시는 김득원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 \* 검사 및 시험 대상표

(별표 1-1)

품 목	검 사 (○표한 품목을 실시함)		
	외관규격조	기능 성능	시험 항목
전 선 류	○	○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전 선 관	○		
전선관 부속 BOX	○		
배선기구류	○		
접지용자재	○		
PULL BOX	○		
TRAY, DUCT류	○		
조명기구류	○	○	K.S 및 특기 시방에 준함
분 전 반	○	○	
동력조작반	○	○	절연 저항, 동작 시험

### \* 입회 사공 시험

(별표 1-2)

항 목	시험 종류	비 고
일반전력설비	절연 저항, 점등 기능 시험	
각종접지장치	접지 저항 시험	

\* 기타 항목은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에 준한다.

NO.	DESCRIPTION	DATE
		CHECK
ISSUES & REVISIONS		
APPR. DATE		
APPR. 석 한 수		
ARCHE.		
CHECK		
DRAWN		
NAME OF DRAWING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1/2		
SCALE A3 = 1/NONE		
DRAWING NO.		
EE- 001		
SHEET NO.		



architects &  
planners Co.,Ltd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205 (4동)  
TEL / (053) 761 - 4164  
FAX / (053) 761 - 4120  
E-mail : theua@naver.com

PROJECT NO.

PROJECT TITLE

NOTE

#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2/2



A1=SCALE : 1/NONE  
A3=SCALE : 1/NONE

## 제2장: 배관공사

### 2-1: 합성수지관 공사

- 1) 일반 경질비닐 전선관과 부속품 및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이에 사용하는 연결용 박스커버 규정은 (5)항을 준수한다.
- 2)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 제조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 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 4)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경색으로 한다.
- 5) 전선관 배관 부속품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종 류	기 호	기 호	박스 커버 규정
매입용 스위치 박스	CSW 1	KSC-8436	KSC-8414 그림6
매입용 4개 이웃트레트	40B54	KSC-8436	KSC-8416 그림1의 5호 10호 또는 14호
박스(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중심1형)	4C854	KSC-8436	KSC-8416 그림의 5호
8각 콘크리트박스(중심1형)	8C854	KSC-8436	KSC-8416 그림의 4호
카프팅	1CG	KSC-8433	
콘넥타	2CR	KSC-8434	
노브랜드	N	KSC-8441	
연결용 박스	CSW 1과 40B54에서 적용		

- 6) 모든 박스는 KSC-8436에 의하여 녹 이웃트 홀(KNOCK OUT HOLE)을 설치 제작하고 녹 이웃트 홀 커버를 취부하여 철근바 취부용 나사를 모든 박스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7) 경질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시 금속제 박스는 제151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 8)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팅을 사용하여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PVC 용 접착제를 사용 시켜 이탈방지 및 방수성 가능성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9)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절연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막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 2-2: 기초전선관 공사

- 1) 기초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 2) 기초전선관은 카프팅 및 콘넥타는 KSC-8423, KSC-8424로 적합하여야 한다.
- 3) 기초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 있어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때 적용한다.

### 2-3: 배관용 플라스틱

- 1) 플라스틱의 규격은 아래에 준하여 1.2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퀼트으로서 모든 물품은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 2) 강판과 악전판이 공용하는 플라스틱은 간단히 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 3) 플라스틱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나트 및 봉지)으로 마감 할 것.
- 4) 천장에 설치하는 플라스틱은 4개소 이상 스티어드에 인트로등을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배선공사

#### 3-1: 전력배선

-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규정 및 소방시설의 설치우지 및 위험을 제조소들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선은 CABLE 및 CORD는 통일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봉갑들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4) 전선의 BOX내 접속은 전선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CONNECTOR는 K.S 표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된 제품 등 시장 최고품을 사용할 것.
- 5) 전선은 배선관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BOX 또는 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절감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경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7) 전선은 기기의 단면 접속은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8) VINYL 전선은 피복은 WIRE STRIPPER법이나 단밀 꺽기법으로 벗기며 CABLE류 및 옥외 CORD들은 단 벗기기를 한다.
- 9) 편조기 있는 전선은 기구 단자에 접속할때 편조기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사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단 벗기기의 표준 길이는 아래와 같다.)

종 별	단 벗기기의 표준길이
저	25MM 2/3하
임	35MM 3/4하
고 입	30mm

- 9) 삼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일자, 접속단자, 전선 CONNECTOR, SLEEVE 등을 사용한다.
- 10) VINYL SHEATH CABLE, CHLOROPRENE SHEATH CABLE 등의 접선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TAPE를 써서 끝쪽이상 걸쳐 강판나 또는 등등의 허리를 갖는 절연물을 써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한다.  
그 경우 TAPE의 길이는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이상 한다.
- 11) CORD 상호 접속은 적합한 접선기를 써서 해야하는 직접 접선에서는 안된다.
- 12) 배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칭례이 미처지 않고 기구 기판에 따라 높낮을 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밸브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NUT 또는 SPRING WASHER를 사용한다.
-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접속부에서도 적어 부울이 소선을 감안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 15) 기구 단자가 누워 나사형 CLAMP로 표기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통합 단자를 부착한다.
- 16) 전선에 알미 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실선의 선단에 날편을 시행한다.
- 17) 전선을 1본 범위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 18) 전선의 새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착 평형을 청결할 수 있도록 하여 세 TAPE로 고별하여야 한다.
- 19) 전선의 새별은 다음과 같아야 미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자원 3종식(내선·배선 방식 전류축, 적축, 철색 접지축; 녹색 중성선·백색 또는 철색)
- 20) 외부의 온도가 50°C 이상이 되는 열발달부 배선자는 15cm 이상 이격한다.(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단체 처리를 한다.)
- 21) 방화벽과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넓어서 벽면보다 1m 이상 둘출시켜 관구를 TAPE로 감아서 보호한다.  
벽면으로부터 둘출길이를 1m 이하로 했을때는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둘출시켜고 관구부에 석면등의 내화성 물질을 5cm 이상 채운다.  
또, 금속관과 방화벽의 접촉은 MORTAR로 충진한다.
- 22) 기기의 온도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5M 이상으로 한다.
- 23) 기기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저항치는 1M 이상으로 한다.
- 24) 기기의 옥내 배선에 대한 내력 절연 저항치를 측정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외래 사용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기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상에 견디어야 한다.

### 제4장 접지공사

#### 4-1 전력기통

- 1)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와 같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 저항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 고압측 전류의 1성지각 전류의 일정부위로 150Ω를 나눈값과 같은 수 이하
제3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이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기동판에 경우 두께 1.5mm, 평평 치수 1,900mm의 것  
나동봉일 경우는 동봉봉 또는 둥 피복, 강봉으로써 직경이 16mm, 길이 1,900mm 인것
- 3) 빙동형은 접지극은 두께 1.5mm, 평평 치수 300mm이상의 동봉으로 한다.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판상, 대상등의 둥 또는 동봉 강제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 4) 도선과 접지극과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기기접지장봉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벳으로 복지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조임을 한후 완전한 날개를 한다.  
나도선의 고장을 끌어내거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전에서 도선을 되돌린후 수개소에서 관의 앞, 뒤에 도선으로 끌어내거나 멀티브론으로 접속한다.  
다른 관은 드는 대상의 접지극과의 접속은 전지 CONNECTOR에 의하여 접속한다.
- 5)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제 법과에 의하는 것 외에는 아래에 의한다.  
기계제 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제권한다.  
나제제 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기능적 습기나 많은 장소로 GAS,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접지극은 상한 길이 0.75m 상한 깊이에 매설한다.  
다리피복은 피복기의 접지극은 헬파동이나 아시는 기능적 1.5m로 한다.  
라피복은 접지선에 FUSE나 자동 차단기 3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 6)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지 저항치가 3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설비는 공용하지 않는다.

NO.	DESCRIPTION	DATE
		CHECK
ISSUES & REVISIONS		
APPR. DATE		
APPR. 수		
ARCH.		
CHECK		
DRAWN		
NAME OF DRAWING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2/2		
SCALE A3= 1/NONE		
DRAWING NO.		
EE- 002		
SHEET NO.		